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대상자에 한하여 인지기능프로그램서비스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서비스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족요양의 경우 쌍방의 계약을 통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분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9%	6%	0%
30분이상	16,940	2,541	1,525	1,016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60분이상	24,580	3,687	2,212	1,475	
90분이상	33,120	4,968	2,981	1,987	
120분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이상	49,160	7,374	4,424	2,950	
180분이상	55,350	8,303	4,982	3,321	
210분이상	61,670	9,251	5,550	3,700	
240분이상	68,030	10,205	6,123	4,082	
480분이상	136,060	20,409	12,245	8,164	

단, 평일 ①간근무 (밤10시~새벽6시)와 일요일 이용시에는 30% 가산금을 지급하며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날 근무시에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① “대상자(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서비스제공계획서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⑤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절차)

- 1. 이용절차
 -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 2. 구비서류
 -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계약해지요건)

- ① 계약서상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다만, 기타 부

특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해지할 수 있다.

-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 히 설명해㉠ 한다.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방문 또는 통신망(유선,이메일,팩스,SNS)을 통 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 하는 경우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